



보건복지부

## 보건복지부



대한민국 대전환  
한국판뉴딜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
---

### 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방역대책 회의(2022.1.14., 1.21.)
- 나.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체계 전국 확대방안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271호, 2022.1.26.)
- 다.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·치료체계 관련 조치사항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313호, 2022.1.26.)
- 라.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2022.1.28.)

- 2. 오미크론 확산의 효과적인 상황 대응과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19 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(대상환자)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환자
- (대상기관)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,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
- (주요내용) 외래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\*하는 경우 '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' 산정
  - \*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은 보험급여과-603호(2022.1.29.) 참고
- (적용기간) 2022.2.3. 진료분\*부터 2022.4.3.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  - \*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적용
  - ※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2.14.부터 가능

붙임: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. 끝.

## 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시장, 부산광역시시장, 대구광역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, 광주광역시시장, 대전광역시시장, 울산광역시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

주무관 **송서현** 보건사무관 **조영대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전결 2022. 1. 29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604 (2022. 1. 29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[shsong98@korea.kr](mailto:shsong98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